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94. 6. .28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4. 5. 16
- 다. 회부일자 : 94. 5. 19
- 라. 상정일자 : 94. 5. 27
- 마. 재상정일자 : 94. 6. 27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가. 제안이유

-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목 적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업무를 균형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 능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 사업선정 및 추진지원
-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
-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 구 성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임명함.

▶ 운 영

- 회의 - 매분기 1회의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협의회 심의조정 사항은 행정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시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수당 및 운영 세칙

- 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등 필요경비 지급
- 조례 제정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운영 세칙으로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백창기)

본 조례는 내무부 준칙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가 가속되어가는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조례로 생각되며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제출자의 제안내용과 의견을 대부분 같이 하나 단, 제6조 제3항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를 “협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코자 함이 어떨가 생각이 됨.

그러므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는 사항은 현재 법제처나 학계에서도 가

부동수가 넘지 않을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통설로 하고 있음.

또한 내무부 조례 준칙에도 본 문항이 없으므로 삭제코자 함.

4. 토론요지

기 구성된 임의단체 “21세기를 준비하는 달서경제인의 모임”과 유사한 점이 많으며 조례 제정의 불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충실을 기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바람.

5. 수정안 요지

본 조례(안)의 회의 규정인 제6조 3항을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를 법제사무관례에 맞게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반대 : 없음.

7. 첨부 :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3 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국제적 감각이 높고 이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 4 조(임기) ① 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장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장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 5 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 8 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9 조(자료의 제출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 협의회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서 주제발표·토론등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 표

당 초 (안)	수 정 (안)
<p>제 6 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 집한다.</p> <p>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p> <p>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u>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 정한다.</u></p>	<p>제 6 조(회의) ①</p> <p>.....</p> <p>②</p> <p>.....</p> <p>.....</p> <p>③</p> <p>.....</p> <p>.....<u>의결한다.</u></p>